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9.15.~9.27.)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13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2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2. 09. 27)
사회문화 위원회 (5)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찬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찬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무철 의원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4)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박호균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강정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홍 의원	원안가결
경제통상 위원회 (1)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종호 의원	수정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1)	강원도 화재피해주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원안가결
교육 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수정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2. 9. 27.(화)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 내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주거안정 지원,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안전 지원, 건강 지원, 및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강원도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경계성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강원도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경계성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지원, 경계성지능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제공 및 경계성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경계성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계성지능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계성지능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성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기찬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양구)

■ 공동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진중호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심영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출산을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태아·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다태아·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태아·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①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각종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태아·다자녀가정에게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매년 2월 2일을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을 정하여 다태아·다자녀가정에게 명패를 제작하여 그 날에 배부할 수 있다.



이기찬 의원 김기홍 의원 심영곤 의원 진종호 의원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기찬 의원(부의장·국민의힘·양구)

■ 공동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국민의힘·원주3),

진종호 의원(경제통상위원회·국민의힘·양양)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삼척2),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다자녀가정조례”라고 한다)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자녀가정조례에서 반비다복카드의 정의 및 발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반비다복카드의 정의 및 발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다. ② 다자녀가정조례에서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한 각종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입장료 등 할인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다. ③ 다자녀가정조례에서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다. ④ 도지사는 강원도민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과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기찬 의원 김기홍 의원 심영곤 의원 진종호 의원

▣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이무철 의원(경제통상위원회·국민의힘·춘천4)



강원도 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서예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서예 창작 환경,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예 창작 환경의 개선, 서예인의 발굴·육성,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제공, 서예인구 확산을 위한 서예 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따른 전시에술부분 후보자로 서예부분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 또는 보호를 받는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② 도지사는 ①에 따른 지원 대상자 1명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2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소유 또는 보호하는 경우에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료 전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박호균 의원



김용복 의원



박관희 의원



엄윤순 의원



원미희 의원



윤길로 의원



이승진 의원



전찬성 의원



최중수 의원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

- 발의 :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본 조례안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매년 징수해야 한다.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3)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찬홍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도시 학생에게 농어촌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학교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 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및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진종호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 공동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박윤미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 항공화물운송장려금을,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항공화물유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항공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된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항공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화주는 지원금 신청서,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①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받는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진종호 의원



박대현 의원



박윤미 의원

■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 공동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이한영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1),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택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기하 의원



김희철 의원



문관현 의원



심오섭 의원



유순옥 의원



이한영 의원



임미선 의원

■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예방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 관리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 관리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